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제 정 2024.07.12.

개 정 2025.08.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란 투자 대상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고객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원칙)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회사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2. 회사는 투자 대상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여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3. 회사는 투자 대상과 재무·비재무 경영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다.
4.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 투자대상의 재무구조·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와 지배구조·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및 투자 전략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활동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다.

1. 경영진과의 대화
2. 투자 대상에 정보·자료 요청 및 서면 질의
3. 비공개 서한 전달
4. 공개 서한 전달

5.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
6. 타 투자자 연대·공개적 의사 표명 등 캠페인
7. 주주제안
8. 기타 법령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② 의결권 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5조(수행조직) ①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식운용본부장, 전략운용본부장, 해당 종목 분석 담당자, 전략운용본부 담당자,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간사는 전략운용본부 담당자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략운용본부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관여 활동 대상(이하 “중점 관여 기업”이라 한다) 지정 및 해제, 활동 계획 결정
2.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 내용 및 결과의 공개 여부 결정
3.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겸직 등에 따라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의결권 수는 1인으로 본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

⑤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관부서는 전략운용본부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한다.

제6조(수행절차) ① 전략운용본부는 해당 종목 분석 담당자와 협의하여 중점 관여 기업 선정 및 활동 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중점 관여 기업 및 활동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② 전략운용본부는 주식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행을 지원하고, 본 지침 및 활동 계획 준수 여부 등을 감독·관리한다.

③ 전략운용본부는 활동계획 종료 후 수탁자 책임 활동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기반으로 중점 관여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종료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⑤ 전략운용본부장 또는 전략운용본부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투자 대상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활동공개)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1.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3.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제8조(내부통제) ①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투자자 상호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의 고객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매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사는 상당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 및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여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임직원은 이의 준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규,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마련하는 절차 등을 따른다.

③ 준법감시부서는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 내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

부 칙(2024. 07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8. 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